

『전시대비전문가』로서의 비상계획관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 : 하이트진로 유명근)



전시대비전문가로서 비상계획관 역할 재정립

① 비상계획관 정체성 정립

② 비상계획관 두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인센티브 제도

③ 전시대비전문가로서 제도 및 여건개선

④ 국가 비상대비 / 동원 거버넌스 구축

⑤ 기타제언

1 비상계획관 정체성 정립



비상계획관 선발 가능 중점관리대상업체 (7천여개) * 현재 480여개 업체 선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업체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
5. 비상시 국민생활이 안전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6. 그 밖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비상계획관협회(이하 “한비회”) 설립 목적



1. 국가안보태세
발전

2. 비상대비체계
확립 기여

정관 제2조
(목적)

3. 소속기관 / 업체
안보역량 제고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위상제고 도모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 (2013. 10. 25)

1 비상계획관 정체성 정립



비상계획관 두는 중점관리업체 480여명 (대령 110, 중령 180, 소령이하 180 여명)

자원관리주관기관	인원	업체, 업종	부협회
기획재정부	6	국책은행, 조폐, 주류, 담배	재비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정보통신, 연구기관 등	과비회
외교부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방부(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 기술품질원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공단	
여성가족부	2	청소년 상담, 진흥	문비회
문화체육관광부	19	신문사, 인쇄출판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26	제분, 도축, 농약, 비료, 수산업	농비회
산업통상자원부	121	방산품, 공산품, 장비수리 등	산비회
중소벤처기업부	3	중기중앙회·진흥공단, 소상공인공단	
보건복지부	50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보비회
환경부	12	환경, 매립, 폐기물처리, 먹는물 등	환경비회
고용노동부	3	근로, 산업안전, 인력관리	
국토교통부	86	건설, 항공 / 육로 수송	교비회, 건비회
해양수산부	23	해운, 항만하역, 예선	해비회
금융위원회	46	은행, 증권, 보험 등	금비회
방송통신위원회	16	방송사 등	방비회
식품의약품안전처	36	식품, 제약업체 등	식약회

1 비상계획관 정체성 정립



비상계획관 자격요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사법」 제3조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장으로 임명할 당시 **전역후 3년**이 지난 사람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결격사유** 등)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비상계획관 선발전형

서류전형

1. 경력 (지휘관 또는 참모 경력, 근무평정, 복무경력)
2. 교육 / 상훈
3. 자격증 (정보화, 관련분야)
4. 한국사 인증



필기시험
(비상대비법 등 4개법
령 + 헌법, 논술)



면접시험

※ 국내 유일 임기제 고위직 선발 시험으로 최고의 난이도 수준 (헌법, 논술)



비상계획관 부여된 임무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 분석
(명시된 임무 없음, 추정 과업도출)

1. 충무실시계획 작성 및 실효화
2. 자원조사
3. 인력, 물자(비축, 비상대비) 관리
4. 비상대비 훈련 / 연습
(을지연습, 충무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무)

- ① 공공기관 및 업체/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업체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 및 확인한다.
1.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 및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3.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장방호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축물자 및 동원물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업무 관련부서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시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지시받은 사항

1 비상계획관 정체성 정립



☐ 재난관리 임무 추가 부여관련 의견

- 포괄안보 차원에서 재난관리 임무를 비상계획관 부여하는 것 외연확대 측면에서 일부 공감, 일부 재난업무 수행 비상계획관 존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25. 3. 20부 시행)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 노력 반영에 따라 해당 한비회 회원에 대한 의견수렴 / 논의 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2(안전책임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지방정부 이외)



[별표 1의2] 재난관리책임기관 (제3조 관련)	
<p><산업통상자원부></p> <p>51. 한국전력기공소</p> <p>21. 한국전력공사</p> <p>15. 대한석탄공사</p> <p>18. 한국가스공사</p> <p>19. 한국가스안전공사</p> <p>20. 한국전기안전공사</p> <p>49. 한국석유공사</p> <p>50. 대한송유관공사</p> <p>53. 한국지역난방공사</p> <p>60.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p> <p>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p> <p>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p> <p>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p> <p>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p> <p>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p> <p>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p> <p>34. 한국산업단지공단</p> <p>1. 제외공간 <국외부></p> <p>3. 지방우정청 <국외부></p> <p>12. 시·도의 교육청 및 <교육부> 시·군·구의 교육지원청</p> <p><국토교통부></p> <p>6. 지방고용노동청</p> <p>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p> <p><문화부></p> <p>55. 한국관광공사</p> <p>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p> <p>77. 예술의전당</p>	<p><국토부></p> <p>8. 지방국토관리청</p> <p>24. 한국도시기구개발공사</p> <p>97. 국토지리정보원</p> <p>37. 국토안전관리원</p> <p>13. 한국철도공사</p> <p>36. 국가철도공단</p> <p>70. 공항철도주식회사</p> <p>71.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p> <p>85. 의정부경량철도주식회사</p> <p>95. 용인경량철도주식회사</p> <p>87. 신분당선주식회사</p> <p>98.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p> <p>99.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p> <p>100. 경기철도주식회사</p> <p>101. 주식회사에스알</p> <p>102. 남서울교통철도</p> <p>103. 서해철도주식회사</p> <p>104. 우이신설전철주식회사 <24. 6. 27 추가></p> <p>7. 지방항공청</p> <p>28. 인천국제공항공사</p> <p>29. 한국공항공사</p> <p>98. 항공교통본부</p> <p>26. 한국도로공사</p> <p>14. 서울교통공사</p> <p>27. 인천교통공사</p> <p>35. 부산교통공사</p> <p>78. 대구교통공사 <24. 6. 27 개정></p> <p>79. 광주교통공사 <24. 6. 27 개정></p> <p>80. 대전교통공사 <24. 6. 27 개정></p> <p>66.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p>
<p><해양수산부></p> <p>10. 지방해양수산업청</p> <p>47. 국립수산업과학원</p> <p>48. 국립해양조사원</p> <p>41. 수산업진흥종합중앙회</p> <p>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p> <p>95. 해양환경공단</p> <p>74. 사단법인 한국선급</p> <p>72. 여수해양항만공사</p> <p>82. 부산항만공사</p> <p>82. 인천항만공사</p> <p>82. 울산항만공사</p> <p>84. 경기팔해항만공사</p>	<p><관광부></p> <p>5.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p> <p>22. 한국환경공단</p> <p>32. 국립공원공단</p> <p>23. 수도권개발거점리공사</p> <p>25. 한국수자원공사</p> <p>9. 홍수통제소</p> <p>4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관리자 포함)</p>

<p><농림축산식품부></p> <p>16. 한국농어촌공사</p> <p>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p> <p>40. 농림식품종합중앙회</p> <p>57. 한국마사회</p> <p>2. 농업축산실업본부</p> <p>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p> <p><산업부></p> <p>11. 지방산업청</p> <p>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p> <p>42. 산림조합중앙회</p> <p>76. 국립기관 <국가보훈부></p> <p>기타부</p> <p>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p> <p>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p>	<p><안방부></p> <p>75. 한국인재개발진흥공단</p> <p>38. 한국인재연구원</p> <p>39. 한국인재개발연구원</p> <p>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p> <p>4. 국립직업소 <산업부></p> <p>43. 대한직업자사 <산업부></p> <p>30. 31. 삭제 <2017. 1. 6></p> <p>54. 삭제 <2017. 1. 6></p> <p>67. 68. 69. 삭제 <2020. 6. 2></p> <p>89 - 94. 삭제 <2020. 6. 2></p>
<p>105.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53호까지, 제55호부터 제66호까지, 제70호부터 제88호까지 및 제95호부터 제10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p>	





☐ 재난관리 임무 추가 부여 의견

- 하지만 조직, 인원, 예산 등 **충분한 여건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재난관리 임무를 명시하면 오히려 비상계획관에게 과중한 업무 부과로 **악용** 가능
ex) 00병원 사례

※ 비상계획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선발(전시 대비)
재난관리 임무 명시보다는 **현행 업체별 여건을 고려한 재난관리 임무수행**
만약 명시할 경우에는 조직, 인원, 예산 등 **충분한 여건을 보장한 가운데 전시대**
비임무 수행에 제한없는 범위내에서 시행

1 비상계획관 정체성 정립



☞ 업체에서 바라 본 비상계획관

왜 우리가 비상계획관을 임명해야하나요?

평시에 아무 혜택도 없는데... 의무만 부과하고...

(중대령) 비상계획관은 임원급 나이에 정부에
서 온 낙하산!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그냥 몇년 조용히 있다 퇴직하면 좋겠는데....

(대위소령) 비상계획관 임무 잘 모르겠
고, 퇴직까지 15년 ~ 20년 일반직으
로 임무부여하여 활용해야지...



비상계획관의 업체 이익증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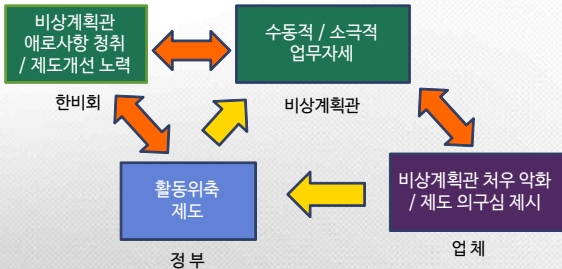
- 코오롱 인0000 (의류소재업체) : 방한복 단체 구매, 신형민방위 복장 정부계약
* 업체특성 고려한 제품 판매로 회사이익 기여
- 한국0000 (인쇄업체) : 정부비밀 발간 1원화 추진
* 정부 보안문제를 착안한 회사이익 달성
- 하이트진로 (주류업체) : 반제품 면허생산 확대(현행 1개→2개) 추진(수송감소)
* 회사 내 정상추진되지 않은 현안문제 확인, 전시 임무로 해결 노력

※ 제시외 많은 비상계획관이 업체 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업체 이익 증진 노력 중

1 비상계획관 정체성 정립



비상계획관 문제점 / 발전방향




※ 정부 : 전시대비전문가로서 역할 수행 가능토록 제도개선 필요

비상계획관 : 능동적 / 적극적 업무자세로 공의무부담사인으로서 역할 충족

한비회 : 비상계획관 역할 수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활동 적극 참여



현실태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일부 평시, 전시 인센티브 있음 
 - * 중견기업이상 업체에서는 평시 혜택이 타 인센티브 제도와 중복으로 실질적 혜택 없음.
- 비상계획관 두는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법적 의무와 처벌만 존재, 추가 혜택 없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벌칙)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항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무만 부과로 이익집단인 업체는 비상계획관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냉소적
 - * 비상계획관과 마찰시 비상계획관 계급 하향, 비상계획관 두는 업체에서 해제 건의

※ 향후 비상계획관 제도의 존폐 위기 직면 가능, 실질적 인센티브 제도 필요

중점관리대상업체 인센티브 현황



참고 1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원제도(인센티브)

평 시

No.	지 원 내 용	근 거
○ 세금액액		
1	중점관리대상물자 생산을 위한 정부의 시설보장 및 확장 명령에 따라 투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4)
2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내어내는 부가가치세의 일체세를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경비 보조 및 대여		
3	비상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계약시 우대		
4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균용규격물자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단, 예외조항이 있음	국가물당사자로서의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군수물조달관리규정 제81조
5	병력동원훈련소집(예비군훈련) 수송차량 임차계약시 동일 조건인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와 우선 계약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참모규정 병무청 훈령 제1839호(21.11.18) 제21조
○ 입찰시 가산점 부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신인도 가산점(0.5점) 부여	행정안전부 예규 253호(23.06.29)
7	「물품적격심사기준,의 신인도 가산점(0.2점) 부여	방위사업청예규 제836호(22.12.30) 별표1
8	「물품적격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의 신인도 가산점 0.5점 부여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의 신인도 가산점 0.5점 부여	국방부훈령 제2692호 별표 5 및 제2691호 별표5
9	정보통신공사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시 가점(3%) 부여	정보통신공사사업시행령 제77조 별표 4
10	「건설매거들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가산점 부여 (0.15~0.06점)	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별표(경기 항목 및 배점기준), 제2호 관련
○ 보증료 감면		
11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경우 0.1%의 보증료 감면	보증료 등의 운용요령(22.08.12)
12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경우 0.1%의 보증료 감면	보증료 등 운용기준(21.06.30)
○ 훈련 등 기타		
13	중점관리대상업체 필수요원의 병력동원 우선우 조장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규정 제99호 병무청 훈령 제1952호(23.3.28)
14	군 적격 동원업체의 필수요원의 예비군훈련 보류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3 국방부훈령 제2765호(23.01.20)

비상사태 시

○ 세계지원

- 군납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소득세 경감
(전시제정경제에관한임시특례법 제16조, 제34조)
-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용품, 원재료는 개별소비세 면제
(전시제정경제에관한임시특례법 제61조)
- 동원물품 수입시 관세 면제(동법 제69조)

○ 자금지원

- 시설전환 자금 및 피해복구 자금 지원

○ 인력관리지원

- 동시동원 2종(기술종사자)인력 : 전시근로소집에 우선동원
- 동시동원인력 : 민방위, 예비군 동원에 우선동원
- 군 동원에 몰자·업체와 동시 동원되는 인력 : 병력동원에 우선동원

○ 기타 지원사항

- 전력, 유티, 수송소요 및 정부비축물자 우선지원
- 업체보유 장비의 동원유보 및 차량운행보장



발전방안 :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세액공제** 인센티브 추진 벤치마킹 / 조세특례제한법 반영

제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24. 7. 14) 대통령 말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윤나크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KTV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cf) 22대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의안 건수 : 국회(181건), 정부(1건)

의안명	제안자 (재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연왕 (주정일자)	의결결과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태영의원 등 10인 (2024. 11. 14.)	(기획재정부)	발의 (2024. 11. 14.)		2205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0인 (2024. 11. 14.)	(기획재정부)	발의 (2024. 11. 14.)		2205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2024. 11. 13.)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4. 11. 14.)		2205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태영의원 등 11인 (2024. 11. 13.)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4. 11. 14.)		2205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준의원 등 10인 (2024. 11. 12.)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4. 11. 13.)		2205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2024. 11. 12.)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4. 11. 13.)		2205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보의원 등 10인 (2024. 11. 12.)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4. 11. 13.)		2205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민국의원 등 12인 (2024. 11. 12.)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4. 11. 12.)		2205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보의원 등 10인 (2024. 11. 11.)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4. 11. 12.)		2205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보의원 등 10인 (2024. 11. 8.)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4. 11. 11.)		2205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2024. 11. 7.)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4. 11. 8.)		2205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11. 6.)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4. 11. 7.)		2205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2024. 11. 6.)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4. 11. 7.)		2205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3인 (2024. 11. 6.)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4. 11. 7.)		2205285



발전방안 : 기업과 군-비상계획관 상생 정책

- ESG 평가체계 상 사회공헌활동(S) 평가항목에 국가보훈부 시행 중인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보완 후 가점 반영

데일리안 PICK · 17시간 전 · 네이버뉴스

"주거사다리 역할부터 사회공헌활동까지"...부영그룹, ESG 경영 ...
이 밖에도 부영그룹은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군부대 장병들 복지 향상을 위한 위문품 전달, 국내외 재난·재해 피해 지원성금,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 국기인 태권도 세계화 지원에도 앞장서며 모범적인 ESG 경영을 ...



비즈월드 · 10시간 전

"또 다른 100년을 위해"...하이트진로, 'ESG 경영' 행보 눈길

사진=하이트진로 대한민국 대표 종합주류기업 하이트진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업계 최초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기존에 이어오던 취약계층...





○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목적 및 활용

- (평가목적) 한국ESG기준원은 ESG평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행을 개선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판단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정보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주주, 투자자,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ESG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ESG정보 제공을 위해 기업의 모범관행 준수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평가하고 있습니다.

- (평가활용) 한국ESG기준원은 적시성 있고, 기업 간 비교 가능한 평가정보를 생산하여 자본시장 내 정보 수요자(기관 투자자, 정부, 국내 상장기업, 자본시장인프라 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등급은 매년 1회 영역별 및 통합 등급을 발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기업의 중대이슈와 ESG리스크 수준을 점검한 결과를 평가등급에 반영한 '등급 조정'을 발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20,000	
		50 -0.25%	
종목요약	MY주식 호가 차트 시세 뉴스		
배당방식		연지급	
작년 1주당 배당금		950원	
배당률		4.67%	
기본정보 2024.11.15 기준			
거래시장	코스피	시총 규모	종형주
시가총액	14,027억	외인비중	9%
대차잔고	21,485백만	신용비율	1.40%
대용가	15,630원	자본금	3,632 (억원)

ESG 등급 ① [더보기 >](#)

통합등급 B

☞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 ESG등급 결과** 반영으로 지대한 관심



○ 사회(S) 평가 모형

-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비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ISO26000 등 사회적책임경영과 관련된 국제적인 표준, 지침, 사회 모범규준과 평가모형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 평가지표는 주요 인권, 안전 등 사회적책임경영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분류 9개, 중분류 26개로 구성됩니다.
- 평가대상기업은 산업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28개 산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분류에 따라 평가지표를 적용합니다.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I. 리더십과 거버넌스	가. 전략과 방침	VI. 지속가능한소비	가. 소비자 권익 보호 거버넌스 나. 소비자 권익 침해 위험 관리 다. 소비자와의 소통 라.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피해보상 마. 지속가능한 소비 전략
II. 노동관행	가. 공정하고 차별없는 고용 나.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다.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라. 근로자역량 개발 및 지원	VII.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 다. 정보보호 투자 라. 정보주체 권리 보장
III. 직장내 안전보건	가. 안전보건 거버넌스 나. 안전보건 위험 관리	VIII. 지역사회참여 및 개발	가. 지역사회 참여 거버넌스 나. 지역사회의 위험관리 다. 지역사회 참여 성과 관리
IV. 인권	가. 인권경영 거버넌스 나. 인권 위험 관리	IX. 이해관계자소통	가. 사회적책임경영 정보 공개
V. 공정운영 관행	가. 공정운영 거버넌스 나. 공정운영 위험 관리 다. 동반성장 기반 확립 라. 공급망 위험 관리		

사회 산업분류체계(28개)

산업분류	
1. 에너지	15. 제약과 생물공학
2. 소재	16. 은행
3. 자본재	17. 증권
4. 상업서비스와 공급품	18. 디지털금융
5. 운송	19. 보험
6. 자동차와 부품	20. 부동산
7. 내구소비재와 의류	21.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8. 호텔, 레스토랑, 레저 등	22. 기술하드웨어와 장비
9. 소매(유통)	23. 반도체와 반도체장비
10. 교육서비스	24. 전자와 전기제품
11. 식품과/또는 식료품소매	25. 디스플레이
12. 식품, 음료, 담배	26. 전기통신서비스
13. 가정용품과 개인용품	27.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14. 건강관리장비와 서비스	28. 유틸리티

☞ 군 관련 평가지표 미반영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인증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중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일차리 창출과 고용속진을 장려한 기업을 발굴하고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기업 현황

· 현 인증기업 수: 75개

(2023년 말 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4(-)	16(-)	23(10)	25(11)	25(16)	23(15)	28(15)	32(14)	43(24)

* (-) 재인증기업

V 인증 지표(신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방법	증빙자료
1.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경영층 인터뷰(10점)	제대군인 채용의지 및 인재육성	10점	정성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성과/지속적 관심과 의지수준 등)
	a. 제대군인 채용 현황(15점)	2년 이상 재직 중인 제대군인 출신 상시근로자 수	1인당 3점 (최고15점)	정량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에 없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이월상환신고서 확인)
	b. 제대군인 신규 채용 현황(15점)	신규 채용된 제대군인 상시근로자 수	1인당 3점 (최고15점)	정량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 채용 및 고용 안정성(20점)	c. 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20점)	1년까지 5점+ 초과1년마다 1점씩 가산(최고20점)		정량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a. 제대군인 대상 별도의 채용 절차 진행여부(10점)		1건당 5점 (최고10점)	정량	채용공고문, 관련 인사팀 자료, '제대군인 구인구직 민선의 날' 참여증빙 자료, 리플렛, 보도자료 등
	b.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정도(10점)		1건당 5점 (최고10점)	정량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대군인 채용 계획 및 공고문 전달 여부 등
3. 모집 및 채용 시스템(20점)	a. 기업경영 건전성(10점)		2-10점	정량	신용평가서 등급 참고 (COX+이하는 0점처리)
	b. 기업의 업력(10점)		1-10점 (1년 미만 1점, 10년 이상 기업은 모두 10점 처리)	정량	개인기업은 사업계시표, 법인기업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이 기준

- 주 1)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중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 상시근로자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용직을 제외하고 상시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
 3) 지표에 대한 실적 인정기간은 별첨서식 참조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인증 지표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두는 업체 평가점수 반영



2 비상계획관 두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인센티브 제도

Ⅶ 인증 혜택

- 심사비용 : 무료(전액 국고금 지원)
- 국가보훈부 장관명의 표창 및 인증패 · 인증 표지판(현판) 수여
- 인증 결과 홍보 지원(보도자료 배포)
- (법무부) 외국인 채용을 위한 사증 · 체류 우대
- (관세청) 관세조사 1년 유예
- (방위사업청) 방산 육성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가점 부여
- (서울특별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 근무환경개선금 등 / 청년 1인 최대 15백만원, 기업당 최대 3명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고용친화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우수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충청북도)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무역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추가 제공 등 무역보험 특별지원
 - 국외기업 신용조사 5회 무료 제공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 (금융위원회)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여신지원 시 금리우대

- (인천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기업 특별보증지원
 -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지정 심사 시 인증 의료기관 가산점 부여, 국가보훈부 장관표창, 국가보훈부 주관 취업박람회 개최 시 부스 우선 배정
 - ISO 심사비 할인 혜택 제공
 - ISO 인증실무자 교육 제공
 - CE 전기전자, 기계, 의료기기 제품인증 진행 시 회원사 비용 적용
 - CE 시험비용 회원사 적용
 - 신규 채용 시 우수인재 pool 제공 등
- ※ 일부 인증혜택은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 제대군인 우수기업 인증제의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증신청 적음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법적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총 5,911개사

대기업	668개사
중소기업	4,110개사
공공기관	1,133개사





-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분	기연명	지원사업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공도사업)	가점 5점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심사	선정 심사 시 우대 가점 5점 이내
국방부		철원친화장소기업(중소, 중견)	"혁신역량" 인증 보유 현황 산정 시 1점 부여
		기술융역 적격심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일반융역 적격심사	가점 0.4점 가점 0.4점 가점 0.4점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보증료 0.1% 감면 사회기여도 항목 평가 시 반영 가족친화경영정보 관련 사항 포함
		특성경영 우수기업 인증 사업	가점 3점 이내
중앙부처(공공기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매거진화기업 선정 지원사업 스포츠융합 해외인용 획득 지원사업 중소기업성장지원,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방위사업청	육품 적격심사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법무부		출입국 우대	기업당 1명 우대카드 발급 (카드여자는 최대인원까지 동일가능)
		생무청	산업기능요원 인력 지원
조달청		계약이행 능력심사	신인도향목 가점 3점
		기술융역 적격심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일반융역 적격심사	신인도향목가점 0.4점 신인도향목가점 3점 신인도향목가점 3점

구분	기연명	지원사업	지원내용
공공기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벤처기업업제(신입기업유요인) 선정 및 필요인원 채점 추진	가점 3점
		중소기업가전 경쟁력을 제고하는능력 심사	가점 0.5점
중소기업 지원	한국방위산업진흥원	혁신형 중소기업 방위산업 수출비 지원사업	방위산업 수출비 할인(지원사전에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대해 방위산업도 수출비 20% 할인 또는 30% 보너스급) 제공 (3년간 1차일 150억 원) *2024년 이후 적용 https://www.kobaco.co.kr/ismad
		사출물별시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 일반융역 적격 심사 계약포사입과 결정시 가점 부여 경기ITP먼저 입주 신청평가 경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금 평가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료율 인하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
지자체 제공	경기도	국제인증 최초 신규취득 시 할인 기술경영 최고위 가점 신청 우대	취득 비용 20% 할인 신청 시 무심사 합격
		한국표준협회 경기거부회 일회비 면제	200,000원 면제
인천광역시		한국표준협회 경기거부회 "오름이코" 신청비 면제 및 연선 사용료 할인 한국표준협회 경기거부회 최고경영자 조운석 연설회 할인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및 직공교육 지원 신규 가족친화인증기업(기업) 현안해과 지원 인천시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 시상 인천시 "우수기업인 줄" 선정 시 우대	신청비 100,000원 면제 등 연회비 10% 할인 컨설팅, 직공교육 지원 현안 해과 지원 표창 가점 5점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신용보증 수수료 0.1% 감면

금융기타기관제공	IBK기업은행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금리 우대 및 컨설팅	최고1% 금리우대, 재무컨설팅 등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02-729-6772
	KB국민은행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금리 우대 및 컨설팅	최고1.5% 금리우대, 재무컨설팅 등	국민은행 기관영업1부	02-2073-3453
	장주은행	강주시 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대상 금리 우대	대출금리0.5%, 예적금0.1-0.2%우대 등	여신전략부	062-239-6507

가속친화 인증제는 실질적 인센티브 다수 제공으로 많은 인증 시도



현실태

● 비밀취급특례업체 미지정 및 비밀취급인가 미허가로 전시대비업무 전문성 의심
* 현재 약 30% 미지정 / 미보유, 을지연습 간 대표이사 전시업무관련 질문시 대처 불가

● 을지연습 간 보안fax 등 미보유로 시나리오 연계 제한
* 평시 을지연습 뿐만아니라 전시 임무수행에도 실상황 공유 제한

● 비상계획관 보수교육 미참석 등 통제 대책 미흡, 수준별 교육 미실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33조(보수교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충무계획 실효성 부족 근본적인 분야 미해결
* 군부대 수송대책, 1종인력 전평시법 상이로 인한 혼선, 전시 보상금 수령 시기 및 방법 등

※ 정부는 선발 뿐만아니라 전시대비업무 전문성 제고 / 수행 여건보장 필요



발전방안

● 정부차원 비밀취급특례업체 지정 및 비밀취급인가 허가 의무화

* 국정원 정부비밀취급 특례업체 보안준칙 적용으로 제도적으로 사무실, 비밀용 pc 가능



국 가 정보 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밀취급 특례업체」 보안관리 준칙 안내

1. 귀 기관의 부응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2 등에 의거, 「비밀취급 특례업체 보안관리 준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안업무 내규 반영 등 특례업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순 중앙부처 대상 비밀취급 특례업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 결과(대안-623, 2021. 6.21), 일부 부처가 특례업체 보안관리에 어려움 확인

3. 아울러 국정원은 금년부터 매년(12월말 기준) 부처별 비밀취급 특례업체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계획이오니, 관련현황 유지에 단점을 기재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경비·국가보안시설용 분류된 업체 별도 현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붙임 「비밀취급 특례업체」 보안관리 준칙 1부, 끝.

- 특례업체내 비밀 취급장소를 '제한구역' 이상으로 지정, 적정대책 강구

* △ '제한구역' 등 표지판 부착 △ 출입대장 유지 △ 비밀보관 전용 이중 캐비닛 및 파쇄기 등 구비 △ CCTV 등 과학보안장비 설치 등

☞ 총무집행-시행계획, 전시 법령안을 열람해야 **실효적 총무실시계획 작성** 가능

3 전시대비전문가로서 제도 및 여건개선



발전방안

● 단기적 **보안 fax 확보** (하이트진로 국정원 승인 / 25년 예산확보 및 설치)

중기적 **차세대 비상대비정보화시스템(NEPIS) 활용** 정부-업체 상황공유 구축

* 현재 NEPIS 예산 반영 지연, 국동체와 연계사업 고려시 비상대비 / 동원관계자의 관심 필요
NEPIS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충무계획 실효화 관련 제도적 문제점 해소 가능

● 비상계획관 보수교육 수준별 개선 / 결과 통제 및 신상필벌

구분	신임비상계획관	1~2년차	3년차 이상
현행	4일, 합격자	관리과정 / 연 2회(2일), 60명	
개선		관리자과정 기본 / 연 2회(2일), 60명	관리자과정 심화 / 연 4회(2일), 160명

* 자원관리주관기관 보수교육 실시 결과 보고 (행안부), 미실시자 업체 공문발송, 정부포상 배제

☞ 보수교육을 통한 전시대비업무 수행능력 향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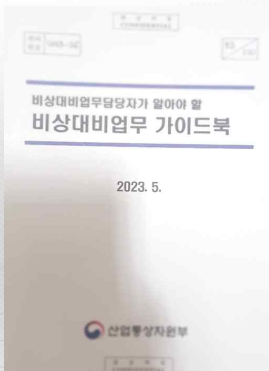
3 전시대비전문가로서 제도 및 여건개선



발전방안

● 충무계획 실효화 토의 정례화 (비상대비계획과+각 자원관리주관기관+한비회)

* 매년 산업통상자원부-한비회 연계 1주일 정도 충무계획 실효성 검증을 위한 TF 운영 중



목 차	
「비상대비업무 가이드북」을 펴내며	1
제 1 장 명시 비상대비업무	3
제 1 절 충무계획 수립	4
제 2 절 유지연습	6
제 3 절 음문지원조시	9
제 2 장 전시전환업무	10
제 1 절 전시 비상계획권의 입무 및 수합절차	11
제 2 절 충무사태 이전	14
제 3 절 충무3종 사태	15
제 4 절 충무2종 사태	27
제 5 절 충무1종 사태	49
제 6 절 충무사태 종결 입무수행도표	52
제 3 장 비상대비업무 발전 제언	54
(부록 I) 전부처 충무계획(지침·기본·지침) 및 전시법령 ..	63
제 1 절 충무계획 핵심내용	64
제 2 절 전시법령 핵심내용	76
(부록 II) 비상대비업무 간 자주 물어보는 Q&A	79
제 1 절 명시 비상대비업무 Q&A	80
제 2 절 전시전환업무 Q&A	86
「비상대비업무 가이드북」을 마무리하면서	98

4 국가 비상대비/동원발전 거버넌스 구축



관련규정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절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제104조(행사목적) ① 전시 국가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자원에 대해 연중 정기적인 **민·관·군 합동점검**으로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있다.

제105조(행사계획 수립, 실시) ①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총무기본계획의 행사지침을 근거로 국방부 행사지침을 동원운영계획에 포함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행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되, 1분기 행사는 국방동원 자원조사로 같음하고, 1~2개 분기는 **시군구**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1개 분기는 **시·도** 또는 **군부대**의 주관으로 종합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④ 행사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자체 처리가 불가능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관련규정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3절 비상대비(동원) 업무발전 협의회 시행

제106조(행사목적) ① 전시 국가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시·도 단위 관·군 합동협의회를 실시하여 동원업무 관련 정책발전 및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동원관계자의 상호 교류활동 및 협조 등 동원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제107조(행사계획 수립, 실시) ①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총무기본계획의 행사지침을 근거로 국방부 행사지침을 동원운영계획에 포함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행사는 시·도 행정관서와 관할지역의 지역방위사단급(함대사, 비행단) 책임 군부대가 합동으로 연 2회 실시한다.

③ 관·군 의사결정권자 공동주관으로 비상대비(동원)업무담당관이 참석하여 관련업무 발전 토의와 상호 업무관계 및 협조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④ 행사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4 국가 비상대비/동원발전 거버넌스 구축



현실태 / 문제점

● 자원관리주관기관 지정 중점관리업체는 본사/공장 위치 상이로 중점관리대상자
원의 날 행사 **참석 제한**

* 중점관리업체 현황(3급비밀 / 행안부 매년 12월 발간)에는 본사 위치만 명시

● 수임군부대와 해당 지역 내 비상계획관과의 **교류 미 실시**

● 관·군 중심의 동원(비상대비) 업무발전 협의회로 **현장의 목소리 청취가 제한**

● 비상계획관 선발자(한비회 회원)에 대한 국가동원 체계 **교육 부재**

* 예비전력담당자는 4년 주기 보수교육 진행

※ **군-관-민(한비회) 다양하고 지속적 교류로**

국가비상대비(동원)발전 문제점/발전방안 제시 기회 확대

4 국가 비상대비/동원발전 거버넌스 구축



발전방안

- **수임군부대별** 중점관리업체 실제 현황(본사, 공장포함) 제공, 비상계획관 중점관리자원관리의 날 행사 참여
 - * 중점관리업체 현황 비밀 작성 시 지역별 세부현황 반영 (행정안전부), 필요시 한비회 제공
- 수임군부대와 지역 비상계획관 교류 활성화 추진
 - * 56사단 첫 교류 행사 (24. 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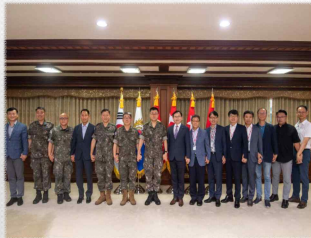
4 국가 비상대비/동원발전 거버넌스 구축



발전방안

● 군-관-민 세미나 및 포럼 등 각종 토론회의 장 확대

- 수방사-한비회 공동 비상대비(동원) 발전 세미나 개최 (24. 7. 11)
- 육군참모총장 - 한비회 동원발전 토의 (24. 7. 23)



☞ 총무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 **발전소요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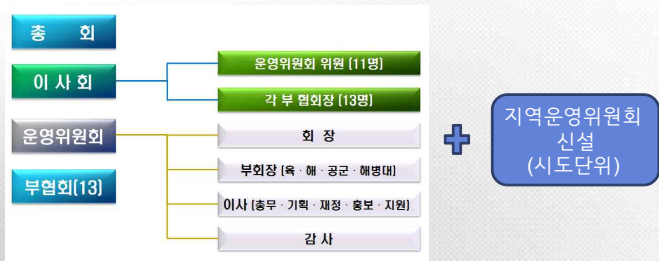
4 국가 비상대비/동원발전 거버넌스 구축



발전방안

● 국가동원(비상대비) 업무발전 협의회 **민(한비회)** 포함 시행 : 연 2회 / 시도별

* 한비회 조직을 수임군부대별 맞춰 지역조직 개편 추진



● 비상계획관 선발자(한비회 회원) 국가동원 체계 보수교육 신설 검토 중 **(육본)**

* 480명 고려 연 2개기수 120명, 4년 주기 교육, 동전사 예비전력교육과(괴산)

* 비상계획관의 국가동원에 대한 이해, 군-민 동원(비상대비) 건설적 토의 기대



현실태 / 경과

- 시군구 비상대비 전담조직 미구성 / 전문가 미임용으로 비상대비 질 저하
 - * 일반공무원 비상대비 업무담당, 잦은 보직교체로 전문성 / 업무연계성 저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행기관) ① 비상대비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시 포함, 이하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이 집행하며,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제10조(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 이하 생략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④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 21대 국회 최춘식, 신원식 의원 등 10명 시군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두도록의 무화 발의(21. 10월), 전체회의(22. 2월) 시 재원조달 / 국민적 공감대 등 신중한 검토입장, 추가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
 - * 국회예산정책처 : 5년간 총 1,010억 7,700만원 추가 재정 소요 추계



☞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 (22. 2월)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비상대비실시계획의 작성¹⁾ 및 자원조사²⁾ 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 시·사변 등 비상사태의 대비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등에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반면³⁾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한 견담공무원이 임명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와는 달리 시·군·구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순환보직 형태로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상대비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

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은 시·군·구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그 담당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군·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시·군·구 단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기 위해서는 직제개편이나 추가임용 등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 증액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바,⁴⁾ 개정안은 이를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안보 상황에 비추어 총무계획, 동원 및 민방위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임명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원 조달 문제 및 국민적 공감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기타제언(시군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의무 선발)



추진방안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시군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의무 선발, 22대 국회 재추진(행정안전위원회)
 - 전문경력관 “가”군 (소령출신) 228명 선발, 전문성 있는 비상대비업무 추진 가능
 - 21대 발의자(10명) : 최춘식, 권은희, 이채익, 신원식, 권영세, 정성호, 정회용, 김성원, 이명수, 김희곤 의원



- 러-우 전쟁 교훈으로 총력전(비상대비) 중요성 인식, 북-러 조약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 국가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재원논리보다 중요)



☐ 현실태 / 문제점

- 열악한 비상계획관 처우 / 여건의 업체에서 잦은 퇴사
- 『전국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 1일(3~4시간) 진행으로 참석율 저조, 중간 귀가

☐ 제언사항

- 자원관리주관기관 및 행정안전부 열악한 업체 확인 / 평가
- 『전국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 총무 3중시 조치부호 훈련개념으로 변경, 1박 2일 조정, 예산 확대 / 의무참석 조치
 - * 국무총리 주관 격상, 국가안보실장, 행안위/국방위 국회의원 격려사 시청



天下雖安
忘戰必危

一九七八年戊午元旦
大統領 朴正熙

